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0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박수민 · 김재섭 · 이인선

윤한홍 · 추경호 · 정연욱

서지영 · 김선교 · 윤상현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한 경영상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을 것
2. 충분한 정보에 바탕할 것
3.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
4.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한 결정일 것
5.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

제622조를 삭제한다.

제623조를 삭제한다.

제624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의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이사, 집행임원,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	<u>제382조의5(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u> 이사가 한 경영상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u>1.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을 것</u> <u>2. 충분한 정보에 바탕할 것</u> <u>3.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것</u> <u>4.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한 결정일 것</u> <u>5.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u> <u><삭 제></u>

<u>務代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관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の 利益을 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② 會社の 清算人 또는 第542條第2項의 職務代行者, 第175條의 設立委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u> <u>第623條(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等の 特別背任罪)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の 利益을 取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하여 社債權者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 以下の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第624條(特別背任罪의 未遂)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u>	<삭 제> <삭 제>
--	---------------------------------------